

# 대학원 법학과 내규(안)

제정 2024. 11. 20.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된다.

## 제 2 장 입 학

본교 대학원 입학전형 학칙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 내규로 정한다.

제3조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서류심사는 ①대학 및 대학원 성적, ②학업 및 연구계획서(대학원 소정양식)로 한다. 구술시험은 ③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④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⑤학업의 지속성과 인성역량으로 시행한다.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 한다.

제4조 (특별전형) 특별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되, 특별전형은 ①경력증명서, ②추천서(대학원 소정양식)의 제출을 추가한다.

제5조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 3 장 학 위 취 득 요 건

제5조 (석사학위 취득요건)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중 수강한 교과목들이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및 외국어(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6조 (박사학위 취득요건)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및 외국어(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박사학위 논문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학진등재지 이상 등급의 논문지에 1편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발표하여야 한다. 게재 승인된 논문도 발표된 논문으로 인정한다.
4.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7조 (석·박사통합학위 취득요건) 법학과에서 석·박사통합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통합과정 지원은 일반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2. 석·박사통합학위에 해당하는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그 외 박사학위 취득요건 2~4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 4 장 종합 시험

제8조 (시험과목)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3과목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할 경우 1과목을 추가로 응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위원) 응시신청을 받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과장이 시험위원이 되어 출제방향, 문항별배점, 평가기준 등을 협의하여 출제한다.

제12조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3조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

## 제 5 장 공개 발표

제15조 (적용대상) 석·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하며, 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는 학술지 논문게재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 (발표시기)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실시하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당해 학기에 공개발표할 수 있다.

제17조 (발표공지) 공개발표의 제목, 일시, 장소 등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을 공개발표 일주일 이전부터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 장소는 참관을 원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심사기준) 공개발표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한 명 이상의 법학과 교수가 공개발표에 참관하여야 하며 그 참관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발표확인) 공개발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 요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